

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# 검 토 보 고 서

2023년도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

대여기금 운용계획안

(문화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추 병 수

# 2023년도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47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10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3. 참고사항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」

## 4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가. 기금사업의 목표

환경공무원 대학생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기진작에 기여

나.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

학자금 대여가 필요한 환경공무원들에게 적기에 자금 지원

## 5. 2023년도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

### ○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2년도말 조성액 ㉠	2023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3년도말 조성액 ㉡=㉠+㉢	비고
		수입㉢	지출㉣	증 감 ㉤=㉢-㉣		
환경공무원 자녀대여 기금	513,547	22,000	80,000	△58,000	455,547	

### ○ 자금 운용 계획

#### -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액	전년도수입액	증 감
계	22,000	24,000	△ 2,000
공공예금 이자	7,000	7,000	0
용자금 상환금	15,000	17,000	△ 2,000

#### -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지출액	전년도지출액	증 감
계	80,000	80,420	△ 420
학자금 대여	80,000	80,420	△ 420

## 6. 검토의견

### ○ 기금 개요

본 기금은 환경공무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 대여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」를 근거로 1995년 설치되었음.

### ○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#### 수입내역은

공금예금 이자수입 700만원

용자금회수수입 1,500만원

총 2억 2,000만원이며,

#### 지출내역은

학자금 대여 8,000만원

- 본 기금은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 관계 법령 및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
## 관련 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(약칭:지방기금법)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기금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21. 1. 12.> 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 5. 30.]

## □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

제2조(기금구성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(이하 “기금“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4.10.20., 2021.12.31.>

1. 일반회계

2.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

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0.20.>

제3조(기금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4.10.20.>

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·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0.20.>